###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05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8.

발 의 자:이 영・강민국・金炳旭

서일준 · 송언석 · 임이자

최춘식 • 추경호 • 한기호

허은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 으나,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(부모, 자녀 등)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.

이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직계혈족임을 근거로 자녀의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해지며,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노출될 위험이 발생함.

또한,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인 배우자 외 그 부모에게까지 찾아가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만, 피해자의 부모는 등· 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음.

### 주요내용

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을 세대원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직계존비속의 신변 보호 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29조제6항). 법률 제 호

##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6항 중 "세대원"을 "세대원 및 직계존비속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열람 또는 등・초본의 교	제29조(열람 또는 등・초본의 교
부) ① ~ ⑤ (생 략)	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	6
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5호	
에 따른 피해자(이하 이 조에	
서 "가정폭력피해자"라 한다)는	
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	
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	
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	
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	
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・군	
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<u>세</u>	<u>세</u>
<u>대원</u> 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	대원 및 직계존비속
는 등・초본의 교부를 제한하	
도록 신청할 수 있다.	<u>.</u>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